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5. 8. 7.>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허가물질

[] 제 조

[] 수 입

[] 사 용

[] 허가

[] 신고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일
------	------	-----	------	----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정보)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주요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물질

[] 제 조 [] 허가 의 [] 변경허가신청서
[] 수 입 [] 신고 [] 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사 용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변경허가신청서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11,700원) 변경신고서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하는 경우 7,200원)

작성방법

-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3. 변경사항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